<부 록>

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○ 이 내용은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정리한 것임.

○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과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.

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 관계 부서
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	○ 산지전용허가 - 지목변경가능 (임야→잡종지) ○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○ 평균경사도 기준 (25도 이하)	○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- 지목변경 금지(임야→잡종지) ○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○ 평균경사도 기준(15도 이하)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최근제·개정법령>산지관리법 시행령, 산지관리법 시행규칙	산지관리법 시행령 ('18.12.4) 산림청 산지정책과 (042-481-4123)
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	○ 79개 품목 지원	○ 79개 품목 + 「산림자원법」에 따른 임산물(목재 및 토석 제외) 지원 ☞ (참고)산림청 공식 블로그>톡톡! 인포/카드뉴스>규제혁신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	임업진흥법 시행규칙 ('19. 1월) 산림청 사유림경영 소득과 (042-481-4194)
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	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	○ 장애인연금 수급자,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고>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	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9. 1월)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042-481-8866)
4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	○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 ○ 6개월 근무 기본 (4~8개월) 탄력적 운용	○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○ 6개월 근무 기본 (4~10개월) 탄력적 운용 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알림마당>2019년 해외산림인턴 모집공고	'19년 해외산림인턴 시행계획 ('18. 12월)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(042-481-8863)
5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완화	○ 특별관리 임산물 포장 규격 제한	○ 품질검사 합격증 부착이 가능한 상자·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 ☞ (참고) 산림청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 법령>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	임업진흥법 시행령 ('19. 1월) 산림청 사유림경영 소득과 (042-481-4208)